

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경비 징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59
--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2008. 5. .
제 출 자 양 주 시 장

□ 제안이유

“양주시자치법규 일제정비 위원회”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조사에 의거 발췌된 일부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가. 인용조문 변경(안 제1조, 제3조)

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인용조문을 변경함

양주시 조례 제 호

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경비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제명 “양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조례”를
“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경비 징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농어촌정비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의”를
“「농어촌정비법」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”로 한다.

제2조중 “시장이”를 “양주시장이”로 한다.

제3조중 “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의2의”를
“「농어촌정비법시행령」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”로 한다.

제8조중 “농어촌정비법”을 “「농어촌정비법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·과·소		기획감사담당관실
입 안 자	설·과·소장 직위·성명	기획감사담당관 백 윤기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의회법무담당 김 정식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김 정식(820-2061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양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 조례	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경비 징수 조례
제1조(목적) ----- <u>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의</u> -----	제1조(목적) ----- <u>농어촌정비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</u> -----
제2조(적용범위) ----- <u>시장이</u> -----	제2조(적용범위) ----- <u>양주시장이</u> -----
제3조(사용경비) ----- <u>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의2의</u> -----	제3조(사용경비) ----- <u>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및 제2 항의</u> -----
제8조(준용)----- <u>농어촌정비법</u> -----	제8조(준용)-----「 <u>농어촌정비법</u> 」-----